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45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박수영·서천호·곽규택

정성국 • 이헌승 • 조경태

이인선 · 김승수 · 김종양

김상훈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 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. 이에 따르면, 구청장선거에 입후 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, 이 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즉,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

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·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. 이에, 시·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·도 및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1항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"를 "시·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·도 및 자치구·시·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(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를 제외한다)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	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			
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			
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			
다만,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			
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			
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			
地方議會議員選舉外 地方自治	시·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		
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	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		
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	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		
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	<u>시·도 및 자치구·시·군의</u>		
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		
니하다.	지고 입후보하는 경우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	2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
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			
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			
다.	<del></del> .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4.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	4다른 지방자		

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선거(제1항 각 호 외의 부분

지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(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원이나 장의 선거를 제외한 다)-----

③ ~ ⑤ (생 략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